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모경중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%에 해당되는 금액을 폐기물 매립시설이 소재한 시·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 및 제29조의2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용어를 통일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박 병 섭)